(구) 예산군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6. 25)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일원 행복주택 15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온라인, 현장)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0.07.06 ~07.13	'20.07.17	'20.07.27 ~07.29			'20.09.28	'20.10.12 ~10.14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예방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및 계약체결은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시 신청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PC 또는 모바일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구)예산군청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0.06.26 ~ 2001.06.2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2013.06.26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5.06.25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또는 대행접수**[신분증, 대행요청신청서, 공급대상별 청약신청서류([5. 신청서류] 참조)을 팩스(비대면) 송부(042-470-0018)하여 수신확인 이후(원본은 대행접수 이후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행 접수 문의 : 042-470-0756. 청약기간만 운영)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21A	대학생	4	8	21.98	10.0492	3.6578	5.0316	40.7186	**12,172**	2,434	9,738	72,010	(+) -		12,172	72,010	6	철근콘크리트 벽식/ 9층/ 개별가스 난방	**2021년 11월 예정**
													(-) 9,000		3,172	94,510			
	청년 (소득無)	4							**12,172**	2,434	9,738	72,010	(+) -		12,172	72,010	6		
													(-) 9,000		3,172	94,510			
	청년 (소득有)								**12,888**	2,577	10,311	76,250	(+) 1,000		13,888	71,250	6		
													(-) 10,000		2,888	101,250			
26A	대학생	14	28	26.99	12.3398	4.4916	6.1785	49.9999	**14,586**	2,917	11,669	86,300	(+) 3,000		17,586	71,300	6		
													(-) 11,000		3,586	113,800			
	청년 (소득無)	14							**14,586**	2,917	11,669	86,300	(+) 3,000		17,586	71,300	6		
													(-) 11,000		3,586	113,800			
	청년 (소득有)								**15,444**	3,088	12,356	91,370	(+) 4,000		19,444	71,370	6		
													(-) 12,000		3,444	121,370			
	주거급여 수급자	4	4						**12,870**	2,574	10,296	76,140	(+) 1,000		13,870	71,140	20		
													(-) 10,000		2,870	101,14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4	4	26.98	12.3352	4.4899	6.1762	49.9813	**16,302**	3,260	13,042	96,450	(+) 5,000		21,302	71,450	20		
													(-) 13,000		3,302	128,950			
36A	청년 (소득無)	5	5	36.86	16.8523	6.1341	8.4379	68.2843	**19,924**	3,984	15,940	117,880	(+) 9,000		28,924	72,880	6		
													(-) 15,000		4,924	155,380			
	청년 (소득有)								**21,096**	4,219	16,877	124,810	(+)11,000		32,096	69,810			
													(-) 16,000		5,096	164,8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	5						**23,440**	4,688	18,752	138,680	(+)13,000		36,440	73,680	6~10		
													(-) 18,000		5,440	183,680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4	4						**22,268**	4,453	17,815	131,750	(+)12,000		34,268	71,750	20		
													(-) 17,000		5,268	174,25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4	14	44.85	20.5054	7.4637	10.2669	83.0860	**28,520**	5,704	22,816	168,740	(+)19,000		47,520	73,740	6~10		
													(-) 22,000		6,520	223,740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3	3						**27,094**	5,418	21,676	160,300	(+)18,000		45,094	70,300	20		
													(-) 21,000		6,094	212,80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각 공급형별의 공급대상에 포함된 공급대상 계층에게만 공급합니다.)
 - 26A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합니다.
 - 26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대학생 및 청년으로 전환합니다.
 - 36A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주거약자용外)로 전환합니다.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고령자(주거약자용外)로 전환합니다.
 -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外)로 전환합니다.
 - 36A, 44A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청년으로 전환합니다.
- **<u>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u>**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 소형냉장고(냉장고장), 책장 및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예산군**) 또는 연접지역(**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외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요건**

(대학생)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대상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예산군 및 연접지역(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이 아닌 곳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예산군을 제외한 연접지역(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예산군이 아닌 곳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	예산군에 3년 미만 거주

※ 21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공급대상자에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배점,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0.06.25~2001.06.25)**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그 외	1인	-	2,116,118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본인은 524,58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신청자만을 세대원으로 간주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예산군**) 또는 연접지역(**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외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요건**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예산군이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	예산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포함)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1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배점,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3.06.26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외벌이)	월평균소득기준(맞벌이)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맞벌이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예산군**) 또는 연접지역(**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외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우선공급 요건**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	예산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포함)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예산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 동일 순위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1955.06.25 이전 출생)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요건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예산군에 5년 이상 거주	-	예산군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예산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요건**

신청자 본인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예산군에 5년 이상 거주	-	예산군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예산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공급대상</th><th colspan="2" rowspan="2">신청접수</th><th colspan="2">인터넷청약자</th><th rowspan="2">당첨자
발표</th><th colspan="2" rowspan="2">계약체결</th></tr>
<tr><th>서류제출
대상자발표</th><th colspan="2">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th></tr>
<tr><td rowspan="2">우선
공급
·
일반
공급</td><td rowspan="2">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계층
고령자계층
주거급여수급자</td><td>인터넷·모바일</td><td>'20.07.06(월) 10:00
~
07.13.(월) 16:00

※토·일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td><td rowspan="2">'20.07.17.(금)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td><td rowspan="2">등기우편</td><td rowspan="2">'20.07.27.(월)
~07.29.(수)

※ 등기우편 서류제출은 '20.07.29(수)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LH 대전충남 지역본부로 송부

* 우편접수 주소 : 하단 참고</td><td rowspan="2">'20.09.28.(월)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
(1661-7700)</td><td>전자계약</td><td>'20.10.12.(월) 10:00
~
'20.10.13.(화) 16:0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r>
<tr><td>현장접수</td><td>'20.07.09(목) ~
07.10.(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접수 장소 :
예산읍복지회관
(예산읍 신례원로 79)</td><td>현장계약</td><td>'20.10.14.(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계약 장소 :
예산읍복지회관
(예산읍 신례원로 79)</td></tr>
</table>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온라인 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한해 현장접수 및 대행접수를 받습니다.**
* **현장접수 시에는 청약신청서류[5.신청서류 → 현장신청 시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및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예산읍복지회관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79)**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장소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사용 후 청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온라인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현장접수자 및 대행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우편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추후 계약방식·장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청약신청 대행접수 안내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로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받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개인정보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금융정보동의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청약신청서류를 팩스(비대면) 송부(042-470-0018)하여 수신 확인 이후(원본은 대행접수 이후 등기우편 발송)에 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행 접수 문의 : 042-470-0756. 청약기간만 운영)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07.17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0.07.2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금회 모집공고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담당자 앞

ㅇ 현장청약 신청자 : 청약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대행접수 신청자 : 대행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07.06(월) 10:00부터 접수마감일 07.13(월)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07.06(월) 10:00부터 접수마감일 07.13(월)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06.2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 접수기간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대상 : 신청자** · **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예비)입주자 선정 시 기존에 선정된 동일유형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박탈됨** ※ (주의) 확인서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그 외]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병무청,민원24

		- 복무확인서(복무중)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시 입주불가)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공사양식 공사양식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일반공급)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그 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병무청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전 임대사업자 행정복지센터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020.10.12(월) 10:00 ~ 10.13(화)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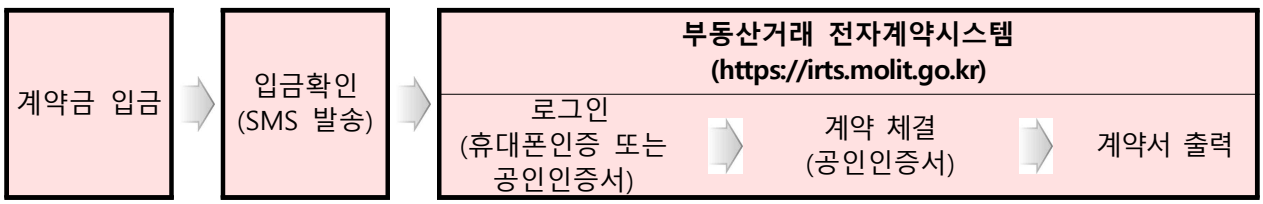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별도 안내 예정)

※ 추후 계약방식•장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10.14(수) 10:00~16:00(12:00~13:00제외)]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td></tr>
</table>

<table>
<tr><td></td><td>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r><td>지구 및 단지특성</td><td>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td></tr>
</table>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는 행복주택 15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데크출입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다지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배치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출입구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운동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급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보관소 1개소, 자전거 보관소 3개소(옥외45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으로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주차장은 96대(지하주차장 43대, 지상주차장 52대,근린생활시설 1대)로 되어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가스 동 차단밸브 박스는 녹지 부위 등에 설치되어 철판뚜껑으로 마감, 노출됩니다. • 단지내 자동차 출입구는 2개소이며 남쪽 출입구에만 경비실이 설치되고 북측 출입구에는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추가 설치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내 보행자 출입구는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집(보육시설), 헬스장 등은 설치 되지 않으며, 설치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101,102동은 중복도형으로 각 세대 진입시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01동 데크 코아에 폐기물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102동 미설치).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온수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가 분할 접합창으로 시공되어 발코니에 난간은 설치 되지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분체도장 철제난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세대경계 벽은 경량칸막이로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벽으로 물건적재 등은 할 수 없으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신청시기가 입주일에 근접하여 신청할 경우 배관,배선 등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발코니 상부에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성능등급 :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부대시설, 상가)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고효율 LED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양변기, 샤워헤드)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급수 펌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연대보증인
(구)예산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기토	㈜송학건설 ㈜송학토건 서도건설산업㈜	㈜광장 ㈜행림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
		소방	㈜송학건설	㈜건일엠이씨	
		전기	성화전기㈜ 경부전력㈜ ㈜동광지에스		
		통신	㈜로뎀산전		
		조경	미계약	-	
		가스	미계약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시점이 건축 준공 전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치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기준	제공대상	신청시기에 따른 설치가능여부	
			건축준공 6개월 이전	건축준공 6개월 미만
현 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O	-
욕 실	바닥단차 없애기		O	-
	출입구 폭 80cm 이상(밖여닫이)		O	-
	수건걸이 1.0~1.2m 내외 설치		O	-
주 방	좌식 싱크대		O	-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내외)		O	-
거 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1.2m 내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O	-
	욕실 출입구 벽체 하부에 야간센서 등		O	-
	세대 내 1개소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O	-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의 주거동에 음성 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O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26B)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설치항목	신청시기에 따른 설치가능 여부	
			건축준공 6개월이전	건축준공 6개월미만
기본설치 품목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85cm 이상(욕실 80cm 이상)	관련법에 따른 의무설치품목	
		출입문 옆 60cm 이상 여유공간		
		레버형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용 마감재 사용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 출입문에 방풍턱 설치 : 1.5cm 이하 2) 현관마루귀틀 높이 : 3cm 이하		
	비상연락 장치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현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측면 바닥에서 75~85cm 수직·수평손잡이		
	욕실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		
신청 시 설치품목	현 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O	-
	부 엌	좌식 싱크대	O	-
		취사용 가스밸브높이 - 바닥에서 1.2m 이내 설치	O	-
	거 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 바닥에서 1.2m 이내 설치	O	-
		조명밝기 600~900Lux, 시각경보기 설치	O	-
	침 실	조명밝기 300~400Lux	O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42-470-0756 (청약기간만 운영)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문의처 약도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5

LH 대전충남지역본부